

2021. 9. 8.(수) 10:00

제290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낙정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낙·경·청(樂·敬·淸)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선비문화체험관의 주차 면적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함.
- 부지 추가 매입으로 대지면적 증가(779.1㎡→1496.1㎡)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변경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 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 사업 규모 변경 및 현실 단가 적용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총사업비 55억→72억)으로 변경 심의 요청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요내용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변경)

- 사업명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공사
- 위치 : 옥포읍 기세리 599 외 4필지
- 사업규모 : 지상3층, 연면적 711.16㎡ (대지면적 1496.1㎡)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송해기념전시관, 체험실, 하늘정원, 카페 등
- 사업기간 : 2019. 8. ~ 2022. 5.
- 사업비 : 2,700백만 원(국 680, 시 336, 군 1,684)
- 변경개요

구분 사업개요		당 초	변 경(안)	증가	비고
위 치	기세리 598	251	251	-	
	기세리 599	440	440	-	
	기세리 523-3	-	717	증 717	추가매입 토지 (지목: 유지)
	기타 (대부, 편입)	88.1	88.1	-	
대지면적(㎡)		779.1	1496.1	증 717	
총사업비(백만원)		2,100	2,700	증 600	군비

※ 총면적 30% 이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요구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 위치 :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다사체육공원 내)
- 기간 : 2018. 11. ~ 2022. 11.
- 규모 : 부지면적 49,380㎡, 건축연면적 1,885.85㎡, 지하1층/지상2층
 - 지하 1층 - 기계실, 계단실(78.41㎡)
 - 지상 1층 - 다목적 체육시설, 사무실, 샤워/탈의실 등(1,500.09㎡)

- 지상 2층 - 북카페 라운지, 대여 라커룸 등(307.35㎡)
- 총사업비 : 72억 원(국비 10, 특교세 11, 군비 51)
- 설계비 2.5억, 감리비 4억, 공사비 65.34억, 시설부대비 0.16억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사업위치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	좌 동	
사업기간	2018. 11. ~ 2022. 5.	2018. 11. ~ 2022. 11.	
사업규모	연면적 2,350㎡,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1,885.85㎡ 지하1층/지상2층	감) 464.15㎡
총사업비	55억 원	72억 원	증) 17억 원
시설용도	다목적 체육관, 사무실, 샤워실, 창고	다목적 체육시설, 사무실, 샤워/탈의실, 북카페 라운지, 대여 라커룸, 다목적실	

※ 총사업비 30% 이상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요구

※ 연도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설계비	250	250		-
공사비	6,534	2,250	4,284	-
감리비	400		400	-
시설부대비	16		16	-
계	7,200	2,500	4,700	-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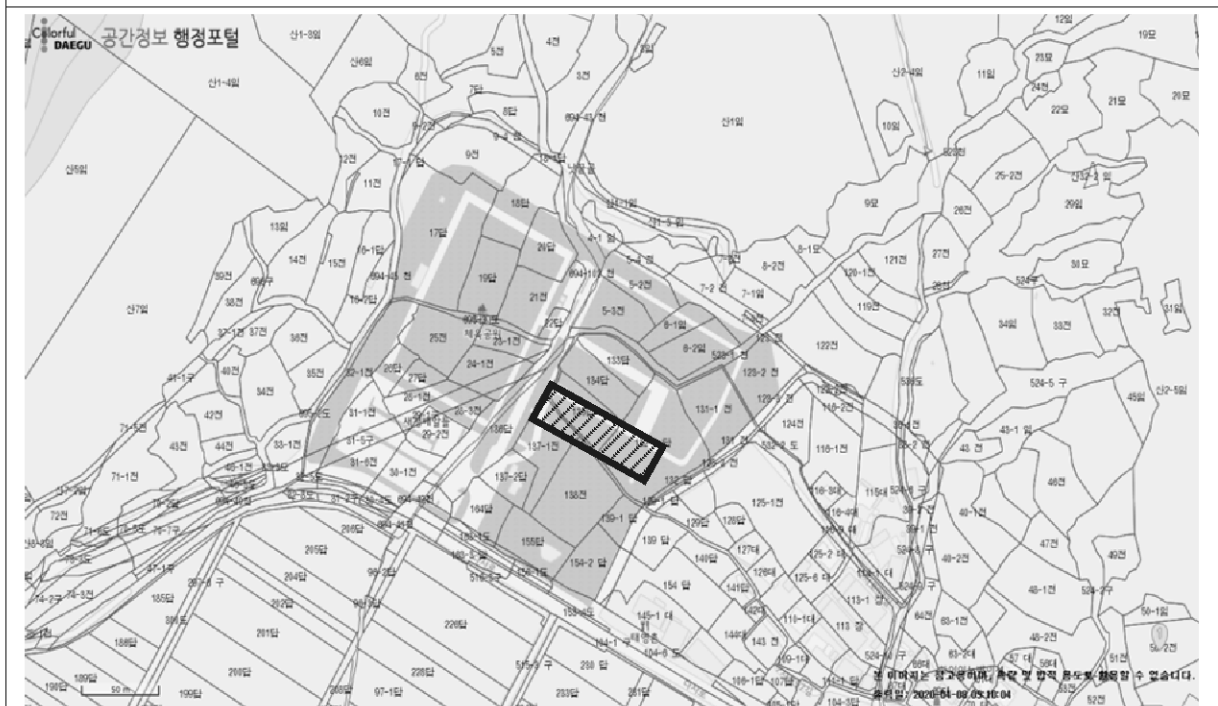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



위 치 도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



조 감 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132-1번지 외 6필지



II. 검토의견

2021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변경

-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중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취득 대상 재산은 옥포읍 기세리 523-3번지로 지목은 유지이고, 부지면적은 717㎡이며,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 취득재산은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도로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으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선비문화체험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낙경청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변경

-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사업 규모 변경 및 현실 단가 적용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총사업비 55억→72억)으로 변경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 사업 규모는 불필요한 지하공간을 축소하고, 주민 활용도가 높은 지상2층을 추가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을 중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증가는 건설노임 증가, 건설 자재 단가 상승으로 불가피 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 금120백만 원
 -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하여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 달천예술창작공간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상시전시 확대 지원

5. 출연 심의요구서 : 불임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불임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 대상	○ 기관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김문오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20백만 원 (군비 120백만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21 당초 예산액</th><th rowspan="2">2021 1회추경 예산액</th><th rowspan="2">2021 2회추경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계</th><th>국 비</th><th>시 비</th><th>군비</th><th>기 타</th></tr> </thead> <tbody> <tr> <td>합 계</td><td></td><td>450</td><td>700</td><td>120</td><td>120</td><td></td><td></td><td>120</td><td></td></tr> <tr> <td>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td><td>1~12월</td><td>300</td><td>550</td><td>100</td><td>100</td><td></td><td></td><td>100</td><td></td></tr> <tr> <td>달천예술 창작공간 운영</td><td>1~12월</td><td>150</td><td>150</td><td>20</td><td>20</td><td></td><td></td><td>2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1 당초 예산액	2021 1회추경 예산액	2021 2회추경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시 비	군비	기 타	합 계		450	700	120	120			120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1~12월	300	550	100	100			100		달천예술 창작공간 운영	1~12월	150	150	20	20			20	
구 분	사업 기간						2021 당초 예산액	2021 1회추경 예산액	2021 2회추경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시 비	군비	기 타																																								
합 계		450	700	120	120			120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1~12월	300	550	100	100			100																																						
달천예술 창작공간 운영	1~12월	150	150	20	20			20																																						
출연 목적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부서 의견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1. 3. 15. ~ 6. 12.)

- 2021년(2020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40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지속가능경영	30	28.16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7.00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30	26.24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총 점	100	91.40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1년 출연금 120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문화도시 예비사업 100백만 원

-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20백만 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 예산액	2021년 1회 추경 예산액 (A)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관 요구액 (B)	부서 검토액 (C)	증감 (C-B)	2회추경 예산액 (C+A)
자체사업비	450	700	120	120	0	820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300	550	100	100	-	650
달천 예술 창작 공간 운영	150	150	20	20	-	17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59.4271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05.17. 등기						
임원 (21.3.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서정길	現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2020.8.20.~2022.08.19	
	비상임이사	김철식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도원길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이치우	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김정화	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생활음악)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전유진	달성군학부모협회 회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한대곤	전. 대구문화재단 이사			2021.3.26.~2022.8.22	
	비상임이사	방호현	달성군 정책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도창곤	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			2020.8.23.~2022.8.22	
	감사	박은주	달성군 문화체육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현황 2020.12.31 기준	자산	9,110백만원
	예산액	4,213	4,866	6,692		부채	1,727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3,190	3,393	5,437		자본	7,383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II. 검토의견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재)달성문화재단의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연금 1억2천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달천예술창작공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주민 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상시 전시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2천만원,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하여 추진중인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최종선정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이번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이견은 없습니다.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260백만 원
 - 2021년 군 금고 출연 대외협력사업비(농협 2.5억 원, 대구은행 1천만 원)를 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
 - 관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의 면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 및 양성

5. 출연 심의요구서 : 불임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 불임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 ○ 대 표 : 김 문 오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기본재산 : 27,572백만 원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260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rowspan="2" style="width: 10%;">구 분</th><th rowspan="2" style="width: 10%;">사업 기간</th><th rowspan="2" style="width: 10%;">2021년 제2회추경</th><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재 원 별</th></tr> <tr> <th style="width: 10%;">계</th><th style="width: 10%;">국비</th><th style="width: 10%;">시비</th><th style="width: 10%;">군비</th><th style="width: 10%;">기타</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td><td style="text-align: center;">2021 년</td><td style="text-align: center;">260</td><td style="text-align: center;">26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260</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1년 제2회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2021 년	260	260	-	-	260	-
구 분	사업 기간				2021년 제2회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2021 년	260	260	-	-	260	-															
출 연 필요성	○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근 거 법 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부서 의 견 (총평)	○ 우리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제)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260백만 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60백만 원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출연액	2021년 출연액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관 요구액(A)	부서 검토액 (B)	증감 (B-A)
총 계	4,310	3,000	260	260	0
기관운영비	해 당	사	항	없	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4,310	3,000	260	260	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장학재단				전화번호	053-668-3982	
					홈페이지	www.dsjanghak.or.kr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0년 설립허가년월일 : 2000. 4. 4. 법인성립년월일 : 2000. 4. 26.						
임원 (21. 7. 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당연직)			2010. 7.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송정근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박명규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서정우	前 달성군의원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이대현	농업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신창섭	자영업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김동조	前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박지팔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곽두섭	前 유가농협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석재추	前 옥포읍면영회장			2019.6.21~2023. 6.20	
	비상임이사	조성태	논공읍 체육회 이사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홍진웅	회원새마을금고 이사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감사	채수열	前 현풍고 행정실장			2021. 6.21 ~ 2023. 6.20	
	비상임감사	배경옥	달성군 회계과장(당연직)			2021.7. 1 ~ 재직기간	
주요기능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무현황 2020.12.31. 기준	자산	24,968백만 원
	예산액	3,626백만 원	4,649백만 원	3,770백만 원		부채	0백만 원
	지자체 지원액	3,320백만 원	4,310백만 원	3,000백만 원		자본	24,968백만 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Ⅱ. 검토의견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재)달성장학재단의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출연금 2억6천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2021년 군 금고 출연 대외협력사업비를 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농협 2억5천만원, 대구은행 1천만원입니다.
- 이번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관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의 면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 및 양성하는 것으로 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이견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으로,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소요 예산을 반영함

3. 주요내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958,000	857,000	101,000
일 반 회 계		949,606	848,670	100,936
특 별 회 계		8,394	8,330	64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894	2,894	—
	의료급여기금	816	752	64
	기반시설	118	118	—
	치수사업	4,564	4,564	—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58,000	857,000	101,000	11.79
일반회계	계	949,606	848,670	100,936	11.89
	지방세수입	196,872	196,872	0	0
	세외수입	40,613	37,284	3,329	8.93
	경상적세외수입	24,769	24,771	△2	△0.01
	임시적세외수입	11,398	8,067	3,331	41.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447	4,447	0	0
	지방교부세	161,898	143,660	18,238	12.70
	조정교부금등	33,262	32,479	783	2.41
	보조금	419,464	345,093	74,371	21.55
	국고보조금등	298,378	233,297	65,081	27.90
	시·도비보조금등	121,086	111,796	9,290	8.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496	93,282	4,214	4.52
특별회계	계	8,394	8,330	64	0.77
	세외수입	121	121	0	0
	경상적세외수입	37	37	0	0
	임시적세외수입	84	84	0	0
	보조금	668	604	64	10.59
	국고보조금등	531	483	48	9.93
	시·도비보조금등	137	121	16	13.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05	7,605	0	0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58,000	857,000	101,000	11.79
일반회계	계	949,606	848,670	100,936	11.89
	일반공공행정	110,082	51,256	58,826	114.77
	공공질서및안전	3,240	3,174	66	2.09
	교육	9,915	11,180	△1,265	△11.32
	문화및관광	61,329	59,565	1,764	2.96
	환경보호	27,380	25,966	1,414	5.45
	사회복지	343,077	324,646	18,431	5.68
	보건	21,417	20,625	792	3.84
	농림해양수산	60,287	57,741	2,546	4.41
	산업·중소기업	4,115	3,715	400	10.76
	교통및물류	126,257	115,273	10,984	9.53
	국토및지역개발	68,176	63,819	4,357	6.83
	예비비	2,935	7,882	△4,947	△62.77
	기타	111,394	103,827	7,567	7.29
특별회계	계	8,394	8,330	64	0.77
	환경	2,894	2,894	0	0
	사회복지	560	500	60	12.00
	국토및지역개발	435	435	0	0
	기타	4,505	4,501	4	0

■ 조 직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58,000	857,000	101,000	11.79
일 반 회 계	계	949,606	848,670	100,936	11.89
	본청	871,602	771,140	100,462	13.03
	기획예산실	22,257	27,129	△4,872	△17.96
	법무감사실	365	338	27	7.88
	자치행정국	139,744	80,150	59,594	74.35
	자치행정과	118,159	58,591	59,568	101.67
	세무과	786	794	△8	△0.96
	징수과	773	696	76	10.98
	회계과	11,919	12,046	△127	△1.06
	종합민원과	613	619	△6	△1.01
	정보통신과	7,494	7,404	90	1.22
	경제환경국	100,238	90,198	10,040	11.13
	일자리경제과	18,097	12,003	6,094	50.77
	환경과	3,353	3,212	141	4.38
	농업정책과	22,169	21,351	818	3.83
	청소위생과	25,789	24,616	1,173	4.76
	공원녹지과	30,830	29,016	1,814	6.25
	주민복지국	373,445	353,991	19,454	5.50
	복지정책과	215,465	205,619	9,845	4.79
	생활보장과	44,866	42,415	2,451	5.78
	희망지원과	74,250	67,449	6,801	10.08
	교통과	38,864	38,508	356	0.92
	건설도시국	160,704	145,269	15,435	10.63
	건설과	93,362	82,702	10,660	12.89
	안전방재과	18,512	16,595	1,917	11.55
	도시과	19,993	19,153	840	4.39
	도시정비과	25,779	23,985	1,794	7.48
	건축과	1,192	1,355	△163	△12.06
	토지정보과	1,866	1,479	387	26.18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일 반 회 계	정책관광국	74,848	74,064	785	1.06
	정책사업과	20,804	20,801	3	0.01
	문화체육과	27,608	25,746	1,862	7.23
	관광과	9,353	9,390	△37	△0.39
	교육청소년과	17,083	18,126	△1,043	△5.75
	직속기관	39,808	38,339	1,469	3.83
	보건소	30,735	29,264	1,471	5.03
	보건과	17,656	15,979	1,676	10.49
	건강증진과	13,080	13,285	△205	△1.55
	농업기술센터	9,073	9,074	△1	△0.01
	의회	2,352	2,336	16	0.68
	의회사무국	2,352	2,336	16	0.68
	읍면동	35,844	36,855	△1,011	△2.74
	화원읍	5,720	5,684	36	0.64
	논공읍	4,319	4,463	△144	△3.22
	다사읍	6,285	6,321	△36	△0.57
	유가읍	3,951	4,099	△148	△3.62
	옥포읍	3,493	3,868	△375	△9.70
	현풍읍	3,766	3,949	△183	△4.63
	가창면	2,778	2,826	△48	△1.69
	하빈면	2,487	2,579	△92	△3.58
	구지면	3,045	3,067	△22	△0.71
특 별 회 계	계	8,394	8,330	64	0.77
	본청	8,394	8,330	64	0.77
	청소위생과	2,894	2,894	0	0
	생활보장과	817	753	64	8.50
	안전방재과	4,565	4,565	0	0
	도시과	118	118	0	0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58,000	857,000	101,000	11.79
일 반 회 계	계	949,606	848,670	100,936	11.89
	인건비	97,663	94,400	3,263	3.46
	물건비	42,025	42,407	△382	△0.90
	경상이전	506,024	429,120	76,904	17.92
	자본지출	282,368	264,247	18,121	6.86
	시설비및부대비	260,612	242,611	18,001	7.42
	민간자본이전	10,825	10,624	201	1.9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743	4,661	82	1.76
	공사공단자본전출금	696	685	11	1.61
	자산취득비	5,492	5,666	△174	△3.07
	융자및출자	10	10	0	0
	내부거래	1,809	1,809	0	0
	예비비및기타	19,706	16,677	3,029	18.16
	예비비	2,935	7,882	△4,948	△62.77
	반환금기타	16,771	8,795	7,976	90.69
특 별 회 계	계	8,394	8,330	64	0.77
	인건비	348	344	4	1.16
	물건비	27	27	0	0
	경상이전	540	480	60	12.50
	자본지출	373	373	0	0
	내부거래	6,912	6,912	0	0
	예비비및기타	193	193	0	0
	예비비	45	45	0	0
	반환금기타	148	148	0	0

4)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기획예산실	달성유튜브방송 운영관리	50	0	△50	
기획예산실	마을가꾸기 사업	450	640	190	
자치행정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0	59,403	59,403	보조
자치행정과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57	77	△80	
자치행정과	공무국외출장 지원	80	0	△80	
세무과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	0	40	40	보조
징수과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 2단계 분담금	0	81	81	
회계과	차량유지비	552	452	△100	
정보통신과	L2 스위치 교체	119	50	△69	
정보통신과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및 세제	1,022	938	△84	
정보통신과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514	464	△50	
정보통신과	다목적용 CCTV 설치	300	600	300	특별 교부세
일자리경제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화원청춘옥상연구소)(국비50%직접지원)	0	370	370	보조 (공모)
일자리경제과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0	655	655	보조
일자리경제과	정부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0	1,247	1,247	보조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00	160	60	보조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68	160	92	보조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164	210	45	보조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달성군&쿠팡 사회적경제온라인판매전)	0	50	50	보조
환경과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	99	145	45	보조
환경과	석면피해보상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0	44	44	보조
환경과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0	32	32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자체처리 보조	30	66	35	
농업정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 생산조정제)사업	187	0	△187	보조
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지원사업	0	954	954	보조
농업정책과	유기질비료 지원	1,105	783	△321	보조
농업정책과	토양개량제 지원	145	91	△53	보조
농업정책과	시설원에 친환경 수정별 지원	330	233	△96	보조
농업정책과	채소가격안정지원	597	346	△250	보조
농업정책과	한우핵심농가육성(거세장려금,등록우구입)지원	30	75	45	보조
농업정책과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지원	180	210	30	보조
농업정책과	가축살처분 보상금지원	95	744	649	보조
청소위생과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44	76	32	
청소위생과	폐기물 처분 부담금	476	416	△60	
청소위생과	재활용품선별장 장비 등 보수유지비	60	100	40	
청소위생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0	1,267	1,267	보조
청소위생과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270	149	△120	
공원녹지과	옥연지 송해공원 시설물 보수	69	109	40	
공원녹지과	상리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0	1920	1920	
공원녹지과	화원명곡 산림욕장 조성	3,700	3,320	△380	
공원녹지과	매개충 산란처 제거사업	500	700	200	
복지정책과	한시 생계지원	0	2,119	2,119	보조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0	149	149	보조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구입 및 지원	0	200	200	
복지정책과	기초연금 지급	74,495	77,955	3,460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복지정책과	2021년 폭염대비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지원사업	0	68	68	보조
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5,336	5,370	34	보조
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1,760	1,912	152	보조
복지정책과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0	49	49	보조
복지정책과	양로시설 운영비	679	723	43	보조
복지정책과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비	977	1,039	62	보조
복지정책과	달성여성대학 운영	50	0	△50	
복지정책과	가정양육지원 사업	9,391	8,881	△510	보조
복지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744	38,753	3,008	보조
복지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589	7,138	549	보조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담임교사지원비	3,439	3,477	38	보조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0	397	397	보조
복지정책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4,195	4,009	△186	보조
복지정책과	민간·가정어린이집 특별환경개선비	0	56	56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6,540	26,694	154	보조
생활보장과	2021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0	1,447	1,447	보조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394	324	△70	보조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2,000	2,204	204	보조
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	152	119	△33	보조
희망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20	1,085	65	보조
희망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1,806	3,706	1,900	보조
희망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25	2,646	1,920	보조
희망지원과	희망가족돌봄지원	0	36	36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희망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인력 증원	0	149	149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0	104	104	보조
희망지원과	백신접종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0	55	55	보조
희망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지원	45	0	△45	
희망지원과	아동급식(조식식)지원	422	827	405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급식(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419	224	△194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급식(학기중 중식)지원	0	54	54	보조
희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410	2,290	△120	보조
희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0	339	339	보조
교통과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8,800	11,000	2,200	
교통과	논공 남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1,980	0	△1,980	
교통과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600	650	50	
교통과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313	376	63	보조
건설과	미지급용지 보상비	300	800	500	
건설과	화원 성산리(2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	1,650	150	
건설과	화원 천내리(451-8번지선) 도로개설	1,300	1,450	150	
건설과	논공 금포리 대진섬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건설과	다사 세천리(279-6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600	3,020	420	
건설과	다사 매곡리~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0	200	200	
건설과	옥포 김흥3리 능전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	850	50	
건설과	옥포 기세리 52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5	45	
건설과	옥포 기세리 66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550	500	
건설과	옥포 간경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40	140	10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건설과	옥포 간경리 7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옥포 강림1리 금봉지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5	35	
건설과	옥포 간경리 75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옥포 본리리 240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가창 정대리(77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300	200	
건설과	가창 용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0	1,000	
건설과	가창 옥분리(파티마요양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하빈 동곡2리(동곡농협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4,400	5,100	700	특별 교부세
건설과	현풍 성하2리(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248	398	150	
건설과	현풍 상리 350-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	570	220	
건설과	현풍 원교2리(KT&G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구지 오설리 434-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400	200	
건설과	구지 창리 490-1번지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건설과	유가 가태리 439-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구지 징리 5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구지 징리 8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유가 음리 367-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구지 징리 20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유가 음리 214-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70	70	
건설과	구지 목단리 174-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옥포 김흥2리 77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옥포 김흥2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70	7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건설과	구지 평촌리 568-4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옥포 김흥3리 129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구지 평촌리 61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옥포 김흥3리 13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구지 평촌리 456-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현풍 지리 820-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현풍 자모리 21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건설과	현풍 대리 87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건설과	현풍 자모리 37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현풍 성하리 35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500	900	400	
건설과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	200	100	
건설과	도로굴착복구	2,500	4,000	1,500	
건설과	도로 긴급보수비	800	1,000	200	
건설과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	30	70	40	
건설과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	100	150	50	
건설과	논공 금포리 863-1번지 일원 도로정비	400	900	500	
건설과	유가 가태2리(예연서원) 진입도로확포장	0	500	500	
건설과	유가 쌍계1리 노후교량 정비	0	140	140	
건설과	옥포 신당리 1150-2번지선 도로정비	0	100	100	
건설과	옥포 미진이지비아 북편 연결도로개설공사	30	200	170	
건설과	현풍 국도5호선~원오교간 도로확장	1,000	0	△1,000	
건설과	현풍 오산1리 138번지선 마을안길정비	250	300	5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건설과	현풍 대리 645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	100	450	350	
건설과	가창 군도15호선(우록리 1407-24번지선) 도로확장	0	240	240	
건설과	하빈 대평리 191번지선 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	0	300	300	
건설과	구지 예현리 301~310간(예현마을) 도로확장	200	320	120	
건설과	구지 내리 374-1번지선 외 1개소 마을안길 확포장	300	630	330	
건설과	다사 서재리 서동초교 앞 인도설치공사	0	120	120	
건설과	구지초등학교 통학로 인도정비공사	0	80	80	
안전방재과	다사서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분석·평가용역	280	182	△97	
안전방재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0	200	200	
안전방재과	소규모 하천 환경정비	493	993	500	
안전방재과	구지 징리 688번지선 징리 소하천정비공사	899	949	50	특별 교부세
안전방재과	옥포 김흥리 만수소하천 정비	399	699	300	특별조정 교부금 용도변경
안전방재과	소하천 유지관리	496	996	500	
안전방재과	논공 노이1리 503번지선 대바골 소하천 정비	30	200	170	
안전방재과	가창 상원리 606번지선 상원 소하천정비공사	0	30	30	
안전방재과	다사 매곡리 1099-1번지일원 호안블럭 설치공사	0	120	120	
도시과	달성-고령 상생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0	60	60	
도시과	선비문화체험관 내 물품	0	62	62	
도시과	선비문화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0	600	600	
도시정비과	논공읍 본리리 103-11번지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447	297	△150	
도시정비과	유가읍 양2리 244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	150	7	△142	
도시정비과	하수도 긴급보수	200	350	150	
도시정비과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450	650	20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도시정비과	가창 단산리(206번지건 외 1개소) 농로개설공사	0	55	55	
도시정비과	가창 대일1리(470번지선 외 2개소) 농로개설공사	0	30	30	
도시정비과	옥포 김흥2리(533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60	60	
도시정비과	옥포 김흥리(1067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200	200	
도시정비과	가창 단산리(281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0	30	30	
도시정비과	가창 우록리(1317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100	100	
도시정비과	가창 우록리(303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50	50	
도시정비과	유가 도의리(975-4번지선) 농로개설	80	180	100	
도시정비과	가창 단산리(694번지선) 농로개설	100	470	370	
도시정비과	화원 구라리(1259번지선) 농로개설	100	350	250	
도시정비과	논공 상리(997-9번지선) 선망들농로포장	300	250	△50	
도시정비과	유가 가태리(149번지선) 용배수로개체	150	100	△50	
도시정비과	유가 가태2리(118번지선) 농로확포장	80	290	210	
도시정비과	현풍 대3리(1-20번지선) 농로개설	100	20	△80	
도시정비과	가창 우록리(1556번지선) 농로개설	80	280	200	
도시정비과	논공 삼리리(472-1번지선) 씩실늪 정비	200	150	△50	
도시정비과	다사 문양리(293번지선) 농로개설	100	150	50	
도시정비과	유가 음리(424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0	250	250	
도시정비과	가창 옥분리(311-1번지선) 구거정비공사	0	70	70	
도시정비과	현풍 원교뜰(1123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0	30	30	
도시정비과	현풍 지리(924-1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0	30	30	
도시정비과	화원 성산리(693-2번지선) 암반관정설치	100	66	△34	
도시정비과	옥포 반송리(223번지선) 암반관정이설	120	84	△36	
도시정비과	구지 고봉양수장(용연지) 양수시설설치	300	220	△8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도시정비과	화원 성산설화들 관정 설치공사	0	80	80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000	800	△200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500	910	410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문화 어울마당	60	0	△60	
문화체육과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3,192	3,312	120	
문화체육과	-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150	170	20	
문화체육과	-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550	650	100	
문화체육과	군민체육대회	290	0	△290	
문화체육과	2021 축구 스토브리그	60	0	△60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작업용 차량구입	58	0	△58	
문화체육과	화원명곡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보강 및 주차장 조성공사	118	168	50	
문화체육과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300	350	50	
문화체육과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3,000	4,700	1,700	
문화체육과	다사체육공원 족구장 정비 사업	0	300	300	보조
문화체육과	옥포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0	66	66	
관광과	관광지 점검 컨설팅 및 인증사업	50	0	△50	
관광과	송해공원 야간경관시설물 보수	40	70	30	
관광과	마비정 벽화마을 도시계획도로 및 쉼터조성	100	130	30	
관광과	사문진강맥축제 홍보비	40	0	△40	
관광과	사문진강맥축제	220	0	△220	
관광과	시설관리공단(사문진역사공원)경상전출금	1,111	1,351	240	
관광과	문화재 긴급보수비	130	280	150	
관광과	설화리고분군 발굴조사	900	750	△15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1회추경)	제2회 추경	증감액	비고
교육청소년과	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735	0	△735	
교육청소년과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679	36	△643	
교육청소년과	대구예아람학교 및 달성교육지원청 입구광장 시계탑 설치	0	50	50	
교육청소년과	(재)달성장학재단 출연	3,000	3,260	260	
보건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유료)	204	81	△122	
보건과	선택예방접종비(로타바이러스)	552	276	△276	
보건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34	69	34	보조
보건과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0	103	103	보조
보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0	848	848	보조
보건과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0	341	341	보조
건강증진과	노인운동교실 강사료	63	30	△33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21	58	36	보조
건강증진과	유모차 대여사업	100	0	△100	
건강증진과	치매친화 환경 조성	10	40	30	보조
농촌지도과	농산물가공 창업 학교	50	10	△40	
화원읍	지하서고 기록물 정리 및 이관	0	35	35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570억원 보다 1,010억원(증 11.79%)이 증가된 9,580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86억7천만원 보다 1,009억 3천6백만원이 증액된
9,496억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억3천만원 보다 6천4백만원이 증액된
83억9천4백만원입니다.

□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3억원, 지방교부세 182억원, 조정 교부금 8억원, 국시비보조금 744억원, 전년도 이월금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 불가한 행사경비 및 여비, 각종 사업비 등 168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 당면 현안사업 및 필수지원경비로 상리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9억 2천만원,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2억원,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1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67건 111억원, 하천·수리시설 및 농로정비사업 26건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594억원, 정부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12억5천만원, 한시생계지원사업 21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3억7천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6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이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570억원보다 1,010억원 증액된 9,580억원으로,
- 세입부문에서는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과 2020년도 이월금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추가하고,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감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8월 19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무궁화 진흥 사업, 포상 및 홍보(안 제4조~제7조)

5.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 역사적·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로 인식되고 있는 무궁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및 관리하고 무궁화의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타 시도 조례현황 : 대구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괴산군, 신안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천구, 중랑구 등

○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무궁화 진흥 사업, 포상 및 홍보

○ 검토의견

- 무궁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에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민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궁화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확대 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이고 꽃은 홀·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에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8월 19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안 제4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징수,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정, 수수료의 감면,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안 제11조~19조)

5.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의 반영과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및 동물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안 제5조 ~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10조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 제19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징수, 길고양이의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정, 수수료의 감면,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 검토의견

-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동물의 생명보호와 관리를 체계화한 바람직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최근 맹견 및 반려견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상해 등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또한 절실하므로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유기동물 처리현황(최근3년)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등 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기등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등 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군수가 지정하여 유기등 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등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8. “반려동물”이란 정서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행위를 당한 동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지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4.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④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등 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규칙 제19조 별표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군수는 유기등 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등 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기등 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등 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 그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없이 무단으로 보호·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등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등 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구조한 유기등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등 동물의 건강 등 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등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등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 등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 등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1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이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유기 등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 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 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출입·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유기등 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나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 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등 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전액
4.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제18조(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동물 보호·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동물보호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
8. 대구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의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
9. 대구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제12조의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4조의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참 고 자 료

- 달성군은 (사)대구시 수의사회와의 지정계약을 통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 유기견 처리비용: 100,000원/두 (구조비, 의료비, 인건비, 사체처리비 등 모든 비용 포함)
- TNR 비용: 150,000원/두 (포획비, 의료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 포함)

[유기동물 처리현황]

(단위 : 두)

구 분	처 리 결 과 별 내 역								축종별 처리내역			
	계	반환	입양	자연사	안락사	보호	방사	TNR	계	개	고양이	기타
2018년	934	66	399	331	130	0	8	220	934	605	328	1
2019년	1140	64	488	328	257	0	3	327	1140	697	436	7
2020년	1047	47	432	366	201	0	1	302	1047	560	485	2

[병원별 유기동물 처리현황]

(단위 : 두)

병원명	구 분	처 리 결 과 별 내 역								축종별 처리내역			
		계	반환	입양	자 사	연 사	안 락 사	보호	방사	TNR	계	개	고 이 양
회원 연합	2018년	228	10	125	82	9	0	2	33	228	116	112	0
	2019년	184	7	92	70	15	0	0	45	184	71	113	0
	2020년	196	7	79	98	11	0	1	47	196	45	151	0
	계	608	24	296	250	35	0	3	125	608	232	376	0
119	2018년	180	17	55	94	14	0	0	35	180	90	90	0
	2019년	145	8	47	76	14	0	0	75	145	63	80	2
	2020년	169	9	43	93	24	0	0	58	169	77	92	0
	계	494	34	145	263	52	0	0	168	494	230	262	2
포산	2018년	68	10	23	26	3	0	6	33	68	37	31	0
	2019년	53	4	30	13	4	0	2	43	53	28	25	0
	2020년	59	5	31	14	9	0	0	38	59	44	15	0
	계	180	19	84	53	16	0	8	114	180	109	71	0

현 품	2018년	40	5	29	5	1	0	0	66	40	27	13	0
	2019년	61	4	42	13	2	0	0	80	61	26	35	0
	2020년	69	3	42	15	9	0	0	75	69	44	25	0
	계	170	12	113	33	12	0	0	221	170	97	73	0
달성 축산	2018년	218	7	50	78	83	0	0	0	218	186	32	0
	2019년	199	9	54	33	103	0	0	0	199	188	10	1
	2020년	228	7	69	47	105	0	0	0	228	209	18	1
	계	645	23	173	158	291	0	0	0	645	583	60	2
명곡역	2018년	127	11	79	36	1	0	0	33	127	78	48	1
	2019년	260	23	171	47	18	0	1	55	260	123	133	4
	2020년	258	12	152	77	17	0	0	50	258	90	167	1
	계	645	46	402	160	36	0	1	138	645	291	348	6
동 인	2018년	43	5	18	7	13	0	0	20	43	41	2	0
	2019년	61	9	16	11	25	0	0	29	61	49	12	0
	2020년	68	4	16	22	26	0	0	34	68	51	17	0
	계	172	18	50	40	64	0	0	83	172	141	31	0
제이스	2018년	30	1	20	3	6	0	0	0	30	30	0	0
	2019년	177	0	36	65	76	0	0	0	177	149	28	0
	2020년	0	0	0	0	0	0	0	0	0	0	0	0
	계	207	1	56	68	82	0	0	0	207	179	28	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한 진정 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없애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협약 내용의 공증의무 사항 삭제(안 제8조제1항)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증인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56조 및 제358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 개정이유

-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자치법규 중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며,
-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가 되더라도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음.
- 또한, 실제 집행단계에서 공증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문제가 있습니다.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간위탁 사업 1,191개 중 약 36%(434개)의 사업에서 수탁자가 공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민사소송법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摺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 안 제8조제1항 협약내용의 공증의무 사항 삭제

○ 검토의견

-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 비용발생 및 공증 비용 전가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 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u>하며, 협약내용은 공증</u> <u>을 하여야 한다.</u>	제8조(협약체결 등) ① ----- ----- ----- ----- <u>한다.</u>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 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상위 법률인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 중심으로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건물번호판 및 시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안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안 제12조)
-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5.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5조, 제52조, 제5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해당 조례의 상위법률「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 개정(2021. 6. 9. 시행) 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 중심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 대구시 타 구 조례 현황 : 동구(2021. 8.11.), 서구(2021. 4.12.), 남구(2021. 6.30.), 달서구(2021. 8.11.)

〈 법령의 위임사항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시('07. 4. 5. 시행) 위임사항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시('21. 6. 9. 시행) 위임사항
•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법 제17조) • 도로명시설 광고(시행령 제18조제4항) • 새주소위원회(시행령 제26조제7항) • 건물번호판 제작(시행령 제9조제5항) • 도로명시설 유지관리 위탁(시행령 제17조)	•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법 제31조) • 주소정보시설 광고(시행령 제45조제4항) • 주소정보위원회(법 제29조제2항) • 건물번호판 제작(법 제13조제4항,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 위탁(법 제33조)
신설 	• 사물주소판 제작(시행령 제43조제5항)
• 고지·고시(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 개발사업지 도로명시설 설치(법 제10조제2항) • 도로명 변경(시행령 제7조제5항)	☞ 법·시행령·시행규칙 이관 ☞ 법·시행령·시행규칙 이관 ☞ 법·시행령·시행규칙 이관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안 제1조(목적)은 「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
-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안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도로명주소법 제31조 위임사항)
- 안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는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규정 (법 제13조제4항,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시행령 제43조제5항 위임사항)
- 안 제4조(광고의 비용)으로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광고의 범위로 유·무료대상을 규정하여 광고비용의 근거를 마련
(시행령 제45조제4항)
※ 유료의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별표3의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 준용
- 안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으로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소정보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 (법 제29조제2항)

- 안 제15조(위탁)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법 제33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였으므로, 위원의 총 인원수를 정할 때 주소정보산업 등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과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화·고도화로 미래 4차 산업의 핵심기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별표 3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달성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조물등 관리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위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관 계 법 령

□ 도로명주소법[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 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③ 및 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군수·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이전설치·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군·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확인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전부개정]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재 사항과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수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후 사진
 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

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광고의 적합성

2.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위반 여부

3. 광고계획서의 적정성

4. 광고의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도로 한정한다)

5. 광고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판으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광고의 내용
 2. 광고를 게재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현황
 3. 광고 게재의 방법 및 기간
 4. 광고사업자의 성명, 업체명 및 주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 나. 실내 위치의 안내
 -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도에는 시·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군·구에는 시·군·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사행 2021. 6. 9] [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21. 6. 9. 전부개정]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